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자료 이용 시, 심사·승인 생략 》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03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제220610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자료 이용 시 심사·승인 생략(안 제32조제4항)	2

I.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제220610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

다. 회 부 일 : 2024.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자료 이용 시 심사·승인 생략(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③ (생략)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장애인등¹⁾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²⁾에서 규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건축법」 제32조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을 운영하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건축물대장·내부도면 등 전산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건축주·건축관계자·건축물 소유자의 다양한 개인정보³⁾를 관리하는데, 시스템상 모든 전산 자료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공할 경우 장애인 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제공⁴⁾될 수 있고,

건축물 관련 행정 비효율 방지를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전산 자료는 시스템 가용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

4)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자나 상속인은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임.

5) 평균 처리기간: 세움터-다른 전산시스템 간 최초 연계(2주 이내), 단건 자료 추출(1주 이내)

한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2206105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2206105호)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서미화 의원안
<신설>	<u>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585